2021 세외수입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ㅇ 비능률·비효율적인 요소 시정·개선

ㅇ 잘못된 관행 차단 통한 세외수입 증대

ㅇ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2. 감사기간 : 2021. 9. 30.(목) ~ 10. 22.(금) / 15일간

3. 감사범위 및 감사인원

ㅇ 감사범위 : 2018 ~ 2021. 8월 세외수입 분야

ㅇ 감사대상 : 동구, 서구, 수성구

ㅇ 감사인원 : 재무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중점

ㅇ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실태

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태

ㅇ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실태

ㅇ 도로점용료 부과실태

Ⅱ 감사결과

1. 총평

부과 누락가능성이 높은 세외수입 부담금 분야 등에 대해 동구, 서구, 수성구를 감사한 결과

○ 부담금 부과 및 토대가 되는 허가·신고 자료의 전산화, 관련 공무원의 노력 등으로 세외수입 분야 업무처리가 전반적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관행을 통한 일부 부적정 처리 실태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음

○ 주요 지적사례로는 「도로점용료 권리·의무승계 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공동주택 분양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확인 소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징수 미실시」등이 있음

○ 앞으로 상기 부적정 사례의 예방을 위해 부담금 부과의 토대가 되는 자료 확인 및 행정시스템 활용을 위해 담당공무원간 업무연찬과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가 필요함

2. 감사성과

○ 행 정 상 조 치 : 15건[시정15건, 주의3건(병과)]

○ 재 정 상 조 치 : 11건 / 537,818천원

○ 신 분 상 조 치 : 1명(훈계1)

Ⅲ 처분 요구서

[일련번호 : 1]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료 권리·의무승계 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후 토지·건물의 소유주 변경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사후에 받음으로써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2016년 12월이후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

지 아니한 158건에 대하여 79,0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동구 □□과는 민원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승계 신고를 양도인이 하거나, 등기 변동 내역이 연계되어 양수인에게 신고의무 사실이 고지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의견에 대한 판단

동구 □□과는 도로점용료 부과와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의 업무처리시 도로법 등 규정에 위반됨에 없이 처리하였어야 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시 정]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점용에 대한 승계신고를 정해진 기간내 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과태료 79,000천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동주택 분양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学校用地)의 조성 · 개발 ·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고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분양자료를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분양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사가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2018년부터 법에서 규정한 분양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21건에 대하여 105,0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시 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105,000천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병원건물 내 장례식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는 “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및 별표4 비고2호에는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용도와 다를 경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편람」 질의회신(국토해양부 2006.9.14.), 부문에는 장례식장은 집회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병원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집회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동구 □□과의 2018~202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을 확인한 결과 5개의 병원 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종합병원 및 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총 41,220,830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시 정] 부적정하게 과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41,220,830원을 추가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대 구 광 역 시

시 정 및 주 의 요 구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확인 소홀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8항에는 주한 외국 정부기관 등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는 “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제2항에는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실제 사용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에는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량 줄이기 프로그램 실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에는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

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관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시설물 미사용 감면 신청 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증축으로 인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된 시설물 7개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조사를 누락하여 시설물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결과 부담금 산정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부담금도 부과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해당 시설물 조사를 통해 금년도 부담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미실시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동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을 일정 이상 증가시킨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오수량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조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산정 및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

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되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기간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

존치기간	감면율
1년 이하	100분의 50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100분의 30
3년 초과	감면 없음

아울러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인허가 등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에 따라 오수량을 산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천동 소재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등 3개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면서 최초 축조신고 수리 시에는 건설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가설건축물들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이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과에서는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로 50%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을 받았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들에 대해 연장된 기간만큼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였으나, △△△△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3개소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392,410원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시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392,410원을 징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료 권리·의무승계 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후 토지·건물의 소유주 변경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사후에 받음으로써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2016년 이후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162건에 대하여 81,0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서구 □□□□과는 승계신고 변동사유 발생여부를 건설안전과에서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50만원 과태료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며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앞으로 부동산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점용사항 기재 등을 포함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도로점용 사항을 좀 더 인지하여 기한 내 승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의견에 대한 판단

서구 □□□□과는 도로점용료 부과와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의 업무처리시 도로법 등 규정에 위반됨에 없이 처리하였어야 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시 정]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점용에 대한 승계신고를 정해진 기간내 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과태료 81,000천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동주택 분양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学校用地)의 조성 · 개발 ·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고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분양자료를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서구 □□□□□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분양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사 제출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2019년부터 법에서 규정한 분양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건에 대하여 20,0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시 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20,000천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8항 제3호에는 그 밖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 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시설물의 해당목적 외 사용시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제1항 제11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창고는 해당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제3항에는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

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에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 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서대구산업단지 및 염색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서대구산업단지 및 염색산업단지 내의 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에 대해 제조업시설을 갖춘 공장인지, 창고용도 시설물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주어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서대구산업단지 및 염색산업단지 내의 창고 등으로 조사한 125개소의 시설물에 창고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면제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 및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부적정하게 부과·징수된 시설에 대하여 조사표 및 증빙 자료 확인해서 산단 내 창고 등에 해당할 경우 기납부된 부담금을 환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아래 관련자에 대하여는 훈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현 부서 (전 부서)	현직위	현직급	성 명	처분종류
◇◇동 (□□과)	◉◉◉	△급	■■■	훈계

[일련번호 : 9]

대 구 광 역 시

시 정 및 주 의 요 구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확인 소홀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8항에는 주한 외국 정부기관 등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는 “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제2항에는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실제 사용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에는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량 줄이기 프로그램 실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에는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

제 사용하지 않은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관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시설물 미사용 감면 신청 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증축으로 인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된 시설물 6개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조사를 누락하여 시설물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결과 부담금 산정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부담금도 부과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해당 시설물 조사를 통해 금년도 부담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서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을 일정 이상 증가시킨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예외적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건축법」에서 분류·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 상에는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의하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량을 증가시킨 건

축물 용도변경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시에는 각종 영업신고 등 실제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오수량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대구광역시 서구 ■■과에서는 평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신고 업무를 처리할 시 건설안전과에 이를 전달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감사 기간인 2018.1월부터 2021.9월 사이 이뤄진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 소재 일반음식점 등 4개의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건에 대해 부과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 53,862,320원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서구 ■■과는 식품위생업 신고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인가·허가·승인에는 해당되지 않아 하수도관리부서에 별도 통보 의무는 없으나 향후 건설안전과와 협조하여 부과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구 □□□□과는 위생과가 위생업 신고 민원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정도는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시행규칙으로 인해 직접 위생업 신고사항을 통보하지는

않고 있어 일부 부과누락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위생과와 업무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의견에 대한 판단

비록「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명문규정 상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신고·수리 행위를 통해서도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 지연·누락 등에 따른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인·허가 담당부서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 간의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3,862,320원을 징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료 권리·의무승계 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과에서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설과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후 토지·건물의 소유주 변경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사후에 받음으로써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2016년 이후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177건에 대하여 88,5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성구 건설과는 매도인이 도로점용관련 사항을 인수인계해주지 않았을 시 승계인으로서는 허가사항을 인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승계인이 받게 되는 것은 승계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승계 지연신고를 한 승계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민원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의견에 대한 판단

수성구 건설과는 도로점용료 부과와 권리의무 승계신고 등의 업무처리시 도로법 등 규정에 위반됨에 없이 처리하였어야 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시 정]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점용에 대한 승계신고를 정해진 기간내 하지 않은 건에 대해 과태료 88,500천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공동주택 분양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学校用地)의 조성 · 개발 ·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고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분양자료를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분양자료를 제출받으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사 제출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2018년부터 법에서 규정한 분양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건에 대하여 20,0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시 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20,000천원을 부과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대 구 광 역 시

시 정 및 주 의 요 구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확인 소홀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8항에는 주한 외국 정부기관 등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항에는 “부담금=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제2항에는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실제 사용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에는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량 줄이기 프로그램 실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에는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

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관내 가설 및 불법 건축물을 포함하여 모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시설물 미사용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감면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20개소 및 증축으로 인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된 시설물 4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누락하여 시설물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결과 부담금 산정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부담금도 부과할 수 없었다.

4. 관계기관 의견

수성구 □□과는 1년중 7월만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전수조사시 존치기간 만료 및 미운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상황임을 감안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의견에 대한 판단

수성구 □□과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가설건축물 포함)의 경우 조사대상시설물로 분류한 후 실지 조

사 등을 통해 부과여부를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 절차를 누락하였으며, 존치기간이 1년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사 및 부과가 누락되었으므로 상기 의견은 받아 드리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시정] 해당 시설물 조사를 통해 금년도 부담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 미실시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을 일정 이상 증가시킨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오수량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조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산정 및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아래 [표]와 같이 감면할 수 있되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기간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

존치기간	감면율
1년 이하	100분의 50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100분의 30
3년 초과	감면 없음

아울러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인허가 등을 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등에 따라 오수량을 산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 소재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축조신고를 수리하면서 최초 축조신고 수리 시에는 건설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가설건축물들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1] 이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당초 존치기간이 1년 이하로 50%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을 받았던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에 대해 연장된 기간만

1) 수성구 건축과-19802(2020.5.8.)호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를 세무1과, 고산2동, 녹색환경과에 통보하면서 건설과에 대한 통보를 누락함

큼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하였으나, ▲▲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235,550원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시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235,550원을 징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대 구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소 관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 치 기 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용

1. 업무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을 일정 이상 증가시킨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예외적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건축법」에서 분류·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 건축물대장 상에는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의하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량을 증가시킨 건축물 용도변경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할 시에는 각종 영업신고 등 실제 용도

변경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오수량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에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위생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감사 기간인 2018.1월부터 2021.9월 사이 이뤄진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동 소재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1건에 대해 부과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 16,607,000원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시정]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6,607,000원을 징수하기 바랍니다.